

콘텐츠지원사업개선심의위원회운영지침

제정 2017. 02. 02.

개정 2017. 04. 04.

개정 2018. 08. 06.

개정 2018. 09.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 제도개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평가위원’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콘텐츠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평가 또는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내외부 추천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하며, 우리원 평가위원 인력 Pool ‘등록 평가위원’과 ‘미등록 평가위원’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9.10.>

1. **전문가** 인력 Pool 분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
2. **전문가** 자격 및 **평가위원** 참여제한 **기준**
3. 평가위원 선정절차 및 지원사업 진행절차
4.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제도 운영방식 등 제도개선
5. 기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심의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략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산업부원장 및 본부장, 청렴감사실장, 심사평가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7.4.4.> <개정 2018.8.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산업부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6.>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의 의안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8.6.>

⑥ 위원장은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우리원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제도에 정통한 외부 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회 : 반기별 1회(연 2회)
2.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은 논의 안건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제6조(위원회의 출석,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부득이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하며, 심의결과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별표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단, 회의결과는 공개로 한다.

제9조(재심) 위원회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도 재차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0조(위임) 기타 지원사업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제를 득하여, 내부 보고자료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회의록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심 의 위 원		
개	요	
회 의 진 행 경	과	
최 종 심 의 결	과	
첨 부 문 서		
참 석 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별표 2]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개정 2018.8.6.>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직책	소속
위원장		부원장	전략부원장
당연직 (본부장)		부원장	산업부원장
		본부장	경영본부
		본부장	기업·인재양성본부
		본부장	문화기술본부
		본부장	게임본부
		본부장	방송본부
		본부장	대중문화본부
		본부장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정책본부
당연직 (팀장)		실장	청렴감사실
		팀장	심사평가지원팀

※ 간사 : 전략기획팀장